

제411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2월21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3.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7)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76)
5.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4)
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1)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7)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5)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9)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4)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
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3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3
3.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7) 3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76) 3
5.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4) 3
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
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3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3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1) 3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7) 3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 3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 3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5) 3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 3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3
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4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 4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 4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 4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4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4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4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4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4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9) 4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4) 4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 4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 4
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4

3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 행사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민기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나 자구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2.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

3.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7)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76)

5.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4)

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7)

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0)

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1)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7)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0)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5)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1)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8)

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4)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6)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4)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6)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2)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6)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5)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4)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8)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9)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84)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9)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2)
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11시28분)

○위원장 김민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4항까지 총 33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9일 및 21일 3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7건을 의결했습니다.

다.

먼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김예지 의원, 박영순 의원, 강대식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기준상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국내법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수정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화된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국유재산의 출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선버스의 차령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세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구별하여 연장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장동혁 의원, 윤준병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도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 관련 위원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희재 의원, 최인호 의원,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정비요금 협의기간과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표결 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수탁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성능인증제와 운행승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의 대상·기준·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서일준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검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며 철도차량에서 소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엄태영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기비행절차 설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법정형을 상향하며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위원님들과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제명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면서 달빛철도의 유형을 일반철도로 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예타 특례 조항을 삭제하거나 혹은 신속 예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일부 위원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예타 특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제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달빛철도 건설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바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규정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경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경준 위원 법률안 관련해서 의의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민기 유경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달빛철도 특별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인호 간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특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속 예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배려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돼서 한 말씀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타 면제 조항으로 그 의의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해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입법입니다.

저는 예타를 담당했던 KDI에서 연구실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빛철도 특별법을 포함해 가지고 약 30개가 넘는 법안에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의 예타 면제 조항은 기재부장관이 필요시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철도의 국민적 염원과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현재 특별법과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이러한 점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법안 심사를 맡았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백예순한 분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다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법을 원내대표 발의로 내놓으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을 때도 저 역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법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발의한 측에서 반대 입장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심사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백예순한 분의 공동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덜어 낼 부분들은 덜어 내고 최소한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최소화한 부분으로 이 법안을 심사를 했고 저희가 이 법안 심사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법안을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만일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안을 폐기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이상

공동발의 한 분들의 반대의견 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쨌든 소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제도로써 저희가 이렇게 전체 상임위원회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저는 지하화법 얘기하고 싶어서요. 달빛철도는 조오섭 위원님……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조오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여야 위원님들께서 교통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서 달빛철도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 거의 다 막론하고 261명이 특별법, 즉 예타 면제가 핵심인 특별법에 대해서 공발도 해 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SOC를 건설해서 서로 간의 왕래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편리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을 가장 중시에 놓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없는 곳에 SOC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어서 점수표가 바뀐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지방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계속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SOC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현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을 조

금이라도 회피시키기 위해서.

달빛내륙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0.58 정도의 B/C가 나왔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 예타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신속 예타 추진했을 경우, 그것도 예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특별법으로, 예타 면제를 가장 핵심에 둔 특별법을 발의를 하시게 된 거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이 구동성으로 전부 공동발의를 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은 예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타를 면제해서 인구가 없는 지역도 SOC를 건설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지금은 수요가 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게 광주송정역과 서울 간의 KTX 예를 많이 드는데 당시에 수요가 1만 명 정도, 광주송정역의 이용객을 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KTX가 개통된 이후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2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즉 당초에 처음 했던 수요보다 2배 이상이 늘게 된 겁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반대라든가 예타의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게 실시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일은 기재부가 알아서 하겠지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요.

물론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이 하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풍요롭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똑같은 혜택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 권위를 지켜 주셨으면 좋

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이 건입니까, 달빛철도?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타 예외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예타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보다 훨씬 덜한 데도 다 특례를 뒀서 예타 면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의 달빛고속철도를 그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제가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타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 사람 많고 철도가 먼저 있는 데는 사람 몰립니다. 예타 잘 나와요. 거기 또 철도 만듭니다. 경기 북부같이 철도가 아예 없는 데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거기 예타 백날 해 봐야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 예타 제도가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지역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같은 데 서울 통근 거리 한 1시간 내에 철도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사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오히려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예타 제도, 그냥 숫자 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철도 문제는 교통 문제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저는 접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있는 고양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TX 타고 강남에 20분이면 가는 사람하고 차 끌고 가서 2시간 가는 사람은 경쟁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은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전국 어디 있는 분들도 기본적인 동등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설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자치도, 전부 다 특별자치도가 될 판이에요. 전부 다 예타 면제할 판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특혜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제는 이름이 다 특별자치도 될 것 같아요, 다 예타 면제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 내 지역 이것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달빛고속철도 토론이지요?

○홍기원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홍기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저도 법안 심의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또 예타 조항에 대해서 신속 예타로 수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SOC 건설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에 2개를 제가 통과시키는 데 참여한 입장이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당시부터 이게 많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SOC를 건설하는 데 예타를 면제하는 게 적절하냐, 그다음에 이렇게 면제하는 법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계속 선례로 축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타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고쳐서 해야지 정치적 성격으로 자꾸 하나하나 선례를 쌓아 가는 것은 국가의 정책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예타 면제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거고요.

다만 공항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건설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 되는 법들이니까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달빛철도의 경우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에는 44개 노선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만 짚

어서 이것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첫째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또는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이미 철도망계획에 들어 있는 달빛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법안은 나중에 예타 심의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를 계속 이렇게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예타 면제를 규정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법이 스물 몇 개라고 하는데 그런 법들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한 게 있고 또 신속 예타로 하게 되면 예타 면제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타 면제보다는 신속 예타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의 의견이 예타 면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홍기원 위원님 토론 고맙습니다.

다음, 달빛철도지요?

엄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 저도 여기 공동 서명자로서, 제가 토론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나 저희 당에서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광주-대구 잇는 철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견 들어 봐도. 그런데 방금 홍기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앞으로의 SOC 사업의 일관성과 또 형평성을 위해서 일부 수정안을 낸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타 면제 남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때 각 시도마다 하나씩 예타 면제를 해 줬어요. 당시에 충북은 충북선 고속철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라는 선거용 예타 면제 남발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예타 면제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논란이 됐었고,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또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경준 위원님도 말씀하셨

지만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언론과 학계에서도 포폴리즘, 이게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건전 재정 중언의 상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쓴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긴말 드릴 게 아니고, 예타 면제해도 한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속 예타를 해도 한 9개월이면 됩니다. 2025년도에, 착공 시기는 거의 같다는 얘지요. 그래서 어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보다는 신속 예타를 통해서 오명 없이 당당하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또 어찌 보니까 그 쪽의 B/C도 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정말 참 많은 숙의의 토론을 거쳤고요. 법안 자체가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를 하고 여야 26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 속에 예타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복선화 문제를 단선화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고속화를 일반철도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다만 예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교통소위원회에서 기재부 담당 국장 배석하에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요.

물론 비용 대 편익의 문제를 놓고 보면 충분히 제한적인 요소는 있었다라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달빛철도의 문제가 오랫동안 영호남 상징적인 의미의 소통이었던 문제였고, 이게 결코 저는 포폴리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대선후보가 또 대국민 공약을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현재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도 국토종합

발전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이 본인의 입장에서 국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추풍령 이남의 문제로서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예타 문제 그 자체는 저도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좀 변경해 주라, 제도 개혁을 해 달라. 차라리 국가재정법에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2년 이상짜리의 어떤 분류, 1년짜리 분류,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법상으로 올려 주면 오히려 신뢰를 가지고 이런 예외적인 법안들이 안 올라올 것 아니냐라는 내용까지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토의한 끝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토위에서는 의결을 해서 최소한 법사위로는, 우리 국토위에서는 의결을 하는 게 어떠한 위원들의 동의하에 소위에서 의결을 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저도 소위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타 제도를 지방재정법에 한 20여 년 전부터 도입해서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났습니다. 국토부가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균형발전이 안 되는 게 이 예타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기재부에 예타 제도를 없애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신속 예타 제도가 뭐니까? 이게 수도권의 신속 예타 제도입니다. 그 신속 예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에 있는 예타 제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당연히 B/C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큰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도권에 예타 제도를 적용하려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속히 예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 예타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균형발전을 해 달라는 취지를 넘어서 지방소멸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철도가 동서 간의 화합을 하자는 취지보다는, 저는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지방을 조금 경쟁력을 갖추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운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 예타 제도를 도입해서 하자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면서 그나마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 교통소위에서 상당히 많은 주류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 개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소위에서 올라온 그 내용대로 해서 달빛철도는 예타를 반드시 면제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수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다른 법안이지요? 토론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저는 철도지하화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굉장히 환영하고요. 철도지하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대도시들의 도시 단절 효과가 극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있어서 국토부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취약한 경우에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채권 발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성이 나올 만한 곳은 다 아시겠지만 거의 서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냥 이대로, 국토부가 사업성 위주로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국을 위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아니라 서울·수도권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종합계획을 세우시고 재정대책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재정 확보 방안에서 광주든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이 지역 대도시들의 사업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 지금 그냥 사업성이 되는 서울만 하자라는 방식으로 되면 이 특별법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국토부가 준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메가시티 도심이기에 때문에 굉장히 비싼 토지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저희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그렇게 변화하지 않은 도심들도 섞여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거나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하화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일종의 선상 개발이라든지 좀 다른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식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하화하고 일부는 선상 개발이나 여러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개발들이 오히려 더 사업적인 타당성이나 도심 단절 효과를 극복하는 더 좋은 개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처음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단순히 지하화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이후에 사업 구상을 만드실 때는 이게 꼭 지하화가 아니라 선상 개발이든 여러 복합적인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하면서 전체 계획이나 제도나 이후에 향후 법 개정들을 준비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실현 가능한 법도 되면서 이런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상당 부분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철도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은 사업성 부분이 확보가 될 것이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대전을 비롯해서 지방권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상부 개발할 때 규제완화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선상 개발 방식도 다각도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이 법안 논의하면서, 철도부지를 제공하니까 국가 역할을 거의 다한 것처럼 많이 말씀을 주시던데 철도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재산권 자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하화로 가면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고 지상에 일종의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재산권 형태를 제공하는 방식이라서, 저는 이게 국가 역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 도심 단절 효과를 극복하는 굉장히 큰 공적인 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종류의 재정 투입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이 지하화법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소위 때 제가 차관님께 확인하지 못한 생각이 나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요.

대상 철도가, 제2조(정의)에서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유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도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도시철도는 법안 소위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도시철도 소유자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 모델을 적용하기는 좀 힘드니……

○민홍철 위원 이 사업으로는 못 가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보면 일반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도 있는데 그런 도시철도는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통합개발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이 부분은 국가철도에 대해서 검토가 된 법이고요. 이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고 말씀하셨던 도시철도 부분도 추후에 시간을 가지면서 별도의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법제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에 보면 시·도지사도 주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철도도 반드시 포함되는 게 도심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법안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도시철도 부분도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다면 추진단도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조항도 있어요, 제7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있는 도시철도 부지에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수립 계획을 세우실 때 추진단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만약에 그게 수요가 많고 필요성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조에서 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에서 1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1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6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4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0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3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의사진행발언이요?

○**허영 위원** 예, 법률안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민기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영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건축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 법안이 국토법안소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정 위원의 반대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공청회까지 끝난 법안이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계속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1년에 5000동이 넘는 공공건축물이 한 해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 공공건축특별법은 이런 공공건축이 붐어빵 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충분한 설계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광자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양당 간사께서 잘 협의해 주셔서 불필요한 조항들은 삭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라도 국토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국토소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지금 의사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부터 의결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 연장 요구의 건부터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3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2시20분)

○위원장 김민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서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4년 5월 29일

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저희가 신임 박상우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희룡 장관 체제하에서의 국토부 관련 상임위 회의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봐 보십시오. 양 차관 사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8년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장관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임위 회의 때 출석지 아니하고 차관만 회의에 출석하게 한 이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국토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고 그 일에 대해서 소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처음으로 접해 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같은 큰 사건도 접해 봤었고 또 최근에 발표된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마지막 회의에 불출석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회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 회의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이견도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떠날 때는 떠나는 사람의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풀기도 하고 또 후임 장관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갈 부분이 있으면 갖고 가셔서 후임 장관의 부담도 덜어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에서 제가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 대 식	권 영 세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욱	김 수 홍	김 정 재
김 희 국	맹 성 규	민 홍 철	박 상 혁
박 정 하	서 범 수	서 일 준	심 상 정
엄 태 영	유 경 준	이 소 영	장 철 민
정 동 만	조 오 섭	최 인 호	한 준 호
허 영	허 종 식	홍 기 원	

○청가 위원(2인)

김 병 기 김 학 용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재	유
전 문 위 원	장	지	원
입 법 심 의 관	이	현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김 오 진

제 2 차 관 백 원 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 희 업

【보고사항】

○의안 회부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강기운·김희곤·이종성·유상범·백종현·박덕흠·최연숙·박대수·김미애·조명희 의원 발의)

12월 15일 회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인재근·양정숙·김정호·송갑석·김민석·소병훈·윤건영·서동용·도종환·최혜영·최종윤·설훈 의원 발의)

12월 18일 회부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허종식·이성만·배진교·어기구·

김정호·이동주·박성준·주철현·김교홍·신영대·유동수·박찬대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9. 심상정·강은미·장혜영·이은주·양정숙·강민정·류호정·배진교·김두관·정성호·서영교·한준호·이소영·이수진(비)·김철민·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양향자·윤상현·양정숙·최형두·정운천·구자근·어기구·김영식·노용호·장동혁·권은희·김경만·최혜영·조명희·성일종 의원 발의)

1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8. 이인선·김성원·류성걸·김영식·이명수·강대식·장동혁·이종성·권영세·김미애·이만희·윤창현 의원 발의)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2023. 12. 16. 장교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18일 회부됨